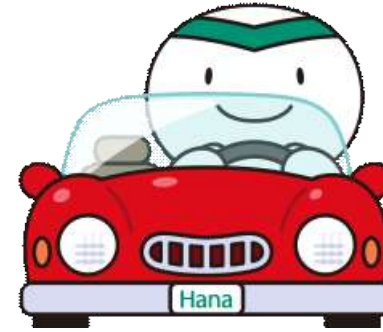


원데이 자동차보험 약관 CONTENTS



원데이 자동차보험 약관

- 보통약관
- 특별약관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2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5
• 사고 발생시 보상처리 절차	6
• 자동차보험의 구성	9
• 보장종목(담보종)별 보상내용	10
• 자주하는 질문 (Q&A)	11
• 용어해설	13
약관 목차	14
보통약관	18
특별약관	98
약관 관련법규	111
찾아보기(색인)	140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 同 Guide Book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주요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 요약한 약관
보험약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약관 : 자동차보험의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 특별약관 : 보험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 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QR(Quick Response) 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기본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지급절차

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보통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지원금특약)	특약 1장 1조	p.98	 1. 보상하는 손해
① 보상하는 손해 ※ 본인이 가입한 특약 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상하는 손해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대인배상 · 대물배상	제3조	p.24	
	자기신체사고	제10조	p.29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제16조	p.32	
	자기차량손해 (타인차량복구비용)	제21조	p.35	
항목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지원금특약)	특약 1장 3조	p.98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본인이 가입한 특약 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대인배상 · 대물배상	제6조	p.24	
	자기신체사고	제13조	p.3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제19조	p.33	
	자기차량손해 (타인차량복구비용)	제24조	p.36	
③ 계약 전 알릴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p.51	 4. 계약인입알림의무
④ 계약 후 알릴 의무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p.52	 5. 계약종료알림의무
⑤ 사고발생 시 의무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p.52	 6. 사고발생시

쉽게 이해하는 약관 요약서

⑥ 보험계약의 취소	제47조(보험계약의 취소)	p.53	
⑦ 보험계약자의 보험 계약 해지·해제	제49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p.54	
⑧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 해지	제50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p.54	

※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단기 보장성 상품으로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5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요약서 p. 5
②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의 정의, 약관본문 내 용어설명 및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제1조(용어의 정의) p. 18
③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QR코드 p. 3
④ '관련법규'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p. 111
⑤ 약관조항 등이 음성·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hanainsure.co.kr), 고객 콜센터(1566-3000)로 문의 가능
-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다른 사람의 차량 운전 시 결제시점부터

최소 6시간~최대 10일까지 당일 바로 보장받는 단기 자동차보험입니다.

사진등록 없이 간편하게 모바일로 365일·24시간 가입 가능합니다.

Q 원데이자동차보험 보상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소보장형부터 종합안심형까지 다양한 플랜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담보	최소형	기본형	종합형	종합 안심형	차량손해 보장형
대인배상	○	○	○	○	
대물배상	○	○	○	○	
자기신체 사고	○	○	○		
자동차 상해				○	
무보험			○	○	
타인차량 복구비용		○	○	○	○
대인1 지원금특약			○	○	
법률비용 지원특약			○	○	

Q 1시간 단위로 가입 가능한가요?

최소 6시간, 최대 10일까지 1시간 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Q 원데이자동차보험 당일에 가입할 수 있나요?


친구, 부모님 등 타인 차량 운전시 당일에 가입해도 즉시 효력 발생이 발생합니다.


Q 가입가능한 차종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가용 승용/화물/승합/장기렌터카 차종입니다. 가입대상은 차량미소유자로 본인·배우자 소유 차량, 일부 법인차량(임직원한정 특약 가입 등),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사고 발생시 보상처리 절차

1.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1  **차량 정지**
 - 사고가 나면 최단거리에서 즉시 정차 후 사고 확인
 -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확인

2  **부상자 구호조치**
 - 사고당사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
 - 부상이 심할 경우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 필요시 119 즉시 신고

3  **현장증거 확보**
 - 사고 구역을 도로에 표시 (차량용 스프레이 등)
 -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목격자를 확보 (목격자 등의 후 인적사항, 연락처 등 요청)
 - 정황증거를 확보한 이후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

4  **사고 신고 및 보험사 통보**
 - 사고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찰서와 보험사에 통보
 * 사고 경.중에 따라 해당 절차가 가장 우선이 될 수 있음

2. 교통사고 처리 상식

1. 사고원인 제공자나 주의 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2.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물적피해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 | | | |
|--------------|-------------------|----------|
| ① 신호·지시위반사고 | ② 중앙선침범사고 | ③ 속도위반사고 |
| ④ 추월방법위반사고 | ⑤ 건물목통과방법위반사고 | ⑥ 횡단보도사고 |
| ⑦ 무면허운전사고 | ⑧ 주취/약물복용사고 | ⑨ 인도침범사고 |
| ⑩ 개문발차사고 | ⑪ 어린이보호구역안전의무위반사고 | |
| ⑫ 화물고정의무위반사고 | | |

4. 아파트 단지 내 등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공항, 학교 구내도로 등 사유 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다중 추돌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달아 계속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뒤차가 한 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앞차 운전자의 충격회수를 물어 최종 판단합니다.
6. 주생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처리는 현장에서 즉시 하시고, 자동차 수리는 가능한 집 근처에서 하십시오.
7.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 칠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처리로 대응하십시오.
8. 심야에 한적한 곳에서의 사고나 여성운전자 사고 시에는 주변상황이 안전한지 여부 판단 후 자동차에서 내리십시오. 상황에 따라 차문을 잠근 채 유리만 내려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9. 서로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 면허증 직접 확인, 현장에서 보험접수 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사고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옳고 그름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당사자 간에 갈등과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보험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성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등의 일반사항, 보장종목별 보상하는 내용, 그리고 보험금 지급으로 이루어진 보통약관*과 운전 가능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장내용 및 서비스내용을 보충·변경·제한 또는 추가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약관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의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한 내용

배상책임	상해	재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대인배상 I 지원금 특별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신체손해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차량 복구비용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해서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추가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내용

보험상품	가입대상	가입가능 차종
원데이	만20세 이상	자가용 승용/화물/승합/ 장기렌터카
원데이 렌터카	렌터카 이용자	대여승용/대여승합
원데이 취급사원	취급업자	자가용 승용/화물/승합

3.보험처리 과정 안내



◆ 사고접수시 구비서류

1. 보험금 지급청구서(당사 소정양식)
2. 운전면허증 사본
3. 차량등록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한정특약 등 가입시 운전자와 기명 피보험자가 다를 때)

보장종목(담보종)별 보상내용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자기신체사고 (or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상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후유장애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자기부담금
일정금액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사망 :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
- 후유장애 : 후유장애등급**별 한도
- 부상 : 부상급별 한도내 지급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장 확대

- 사망 : 한도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후유장애 : 한도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부상 : 실제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기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사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벽·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등의 단독 사고시 보상 불가)

- 1사고당 차량가액 한도
- 최고 3천만원(자기부담금*:50만원)

자주하는 질문 (Q&A)

Q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황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손해보험 콜센터(1566-3000)로 전화하시면 정성껏 도와 드립니다.

Q 사고시 자동차 소유주의 자동차보험이 할증 되나요??

다른 자동차 운전시 자동차 소유주의 자동차보험이 할증되지 않습니다.

Q 대물배상의 대차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여 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해 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통상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단,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 통상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합니다.

Q 피해차량이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대차료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Q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의 '동급'과 동일한 '규모' 대여자동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동급'의 대여자동차는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하며, '규모'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자동차의 종별구분)의 규모별 세부기준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Q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의 대차료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차량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이며, 한도는 25일(실제 정비작업기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입니다. 단,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피해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Q 차량가액(차량시세)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 경우에도 수리비가 보상되나요?
 타인차량 복구비용에서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만드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만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수리비에서 공제합니다. 차량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전부손해발생시)에는 사고발생 당시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물배상에서는 실제수리하는 경우 사고발생 당시 차량가액(차량시세)의 120% 한도내에서 수리비(열처리도장료 포함)를 지급합니다. 다만, 내용연수초과 차량, 영업용 차량은 130%를 한도로 합니다.

Q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타인차량 사고수리시 손해액(수리비 등)의 정액(50만원)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수리비 등의 누수를 방지하여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시) 과실비율 50%, 자차수리비 200만원, 대물수리비 400만원

보장종목	수리비	과실비율 적용수리비	자기부담금
타인차량 복구비용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대물배상	400만원	200만원	해당없음

주) 자기부담금제는 타인차량 복구비용에만 적용되며 대물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정비업체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정비업체에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실제 확정된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차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용어해설

- 가족**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 보장하지 않는 손해** 특정의 사안(예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전쟁, 지진, 태풍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것
- 보통약관** 자동차보험의 주요 담보에 대한 보장내용과 보험계약의 성립부터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등을 정한 내용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보상 한도액)
- 보험금**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약관상 보상액
- 보험료**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상해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 ① 신호·지시위반사고 ② 중앙선침범사고 ③ 속도위반사고
 - ④ 추월방법위반사고 ⑤ 건물·목통과방법위반사고 ⑥ 횡단보도사고
 - ⑦ 무면허운전사고 ⑧ 주취/약물복용사고 ⑨ 인도침범사고
 - ⑩ 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안전의무위반사고
 - ⑫ 화물고정의무위반사고
- 자기부담금** 보험금 지급 시, 일정금액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부에서 가해자 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 후유장애 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약관 목차

원데이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18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22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24
제1절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24
제3조(보상하는 손해)	24
제4조(피보험자)	24
제5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24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4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26
제7조(피보험자 개별적용)	26
제8조(지급준비금의 계산)	26
제9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28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29
제1절 자기신체사고	29
제10조(보상하는 손해)	29
제11조(피보험자)	29
제12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29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0
제14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30
제1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31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32

제16조(보상하는 손해)	32
제17조(피보험자)	32
제18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33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3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34
제3절 타인차량 복구비용	35
제21조(보상하는 손해)	35
제22조(피보험자)	36
제23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36
제2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6
제2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38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40
제26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40
제27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40
제28조(제출 서류)	41
제29조(가지급금의 지급)	42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43
제30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43
제31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43
제32조(제출 서류)	44
제33조(가지급금의 지급)	44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45
제34조(보험금의 분담)	45
제35조(보험회사의 대위)	46
제36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7
제37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47
제38조(공탁금의 대출)	48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49
제39조(보험계약의 성립)	49
제4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49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50
제42조(보험기간)	51
제43조(사고발생지역)	51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51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51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52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52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53
제47조(보험계약의 취소)	53
제48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54
제49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54
제4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54
제50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54
제51조(보험료의 환급 등)	56
제4장 그 밖의 사항	57
제52조(약관의 해석)	57
제53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57
제54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57
제55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58
제56조(보험사기행위 금지)	58
제57조(분쟁의 조정)	58
제58조(관할법원)	59
제59조(준용규정)	59

원데이 자동차보험 별표 및 붙임

<별표1>대인배상,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60
<별표2>대물배상 지급 기준	72
<별표3>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76
<별표4>과실상계 등	77
<별표5>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78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79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91

원데이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1장 대인배상 I 지원금 특별약관	98
제2장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99
제3장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101
제4장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105
제5장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05
제6장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08
제7장 무사고 환급 특별약관	110
※ 관련법규	112

특별약관 색인 목차

구분	특약명	페이지
ㄱ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99
ㄷ	대인배상 I 지원금 특별약관	98
ㄴ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101
ㄱ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104
ㄷ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05
ㄷ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08

원데이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보험요율**’이라 함은 보험료 계산 시 가입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 등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 (관련법규*1)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관련법규*1)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관련법규*3)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 (관련법규*1)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 (관련법규*1)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용어풀이】

- ①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 없이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자동차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담보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 ② ‘**공제계약**’이라 함은 공제조합이 각각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시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돕는 “공제사업”에 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 ①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② **장비**: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③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하이패스 단말기)
- ④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관련법규*3) 제3장 제29조입니다.
- ⑤ ‘**금지되어 있는 물건**’이라 함은 자동차운행에 있어 본인 및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 기준밝기를 초과한 램프, 번호판 가림장치 등)

관련법규 *1) *3)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관련법규 *1) *3)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관련법규*4)

【용어풀이】

‘운전’과 ‘운행’의 차이 : ‘운전’이라 함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 (관련법규*1)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관련법규*4)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관련법규*4)
-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관련법규*17)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 ① **‘법률상의 배우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 ② **‘사실혼’**이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중혼적 사실혼 제외)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인명보호장구**: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법규*2)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를 말합니다.
- 다.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 ① **인명보호장구**: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팬츠·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 ②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③ **소지품**의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 ④ **휴대품과 소지품의 차이**
휴대품은 사고당시 휴대여부가 불명확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으나, 소지품은 파손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지품의 경우라도 도난, 분실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관련법규*1)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19. 마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관련법규 *1) *4) *17)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관련법규 *1) *2)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 새 부품품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에 따른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의 5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대인배상 I 이라 하며,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타인차량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 「타인차량복구비용」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다른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

③ **타인차량**을 그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아 운전하는 자에 한하여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가능합니다.

【용어풀이】

이 보험에서 '**타인차량**'이라 함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정된 1대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자가용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자가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및 영업용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한 경우)
- ②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관련법규*4)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 ④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관련법규*10)에서 정한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보험료	+	특약보험료
구분	내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보험료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특약 등에 적용하는 보험료			

주) 원데이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납입할 보험료** 계산식은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달리, 할인할증등급요율 등 제반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4) *10)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취급업자로서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타인차량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정된 1대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자가용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자가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및 영업용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한 경우)
2.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관련법규*4)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관련법규*10)에서 정한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관련법규 *4) *10)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고의(故意) :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렌터카의 임차인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10.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의 보유자 (제1조(용어정의)제11호)
 3.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관련법규*18)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관련법규*18)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관련법규 *18)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용어풀이】

피용자 :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보유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4. 피보험자동차에 실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5.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 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7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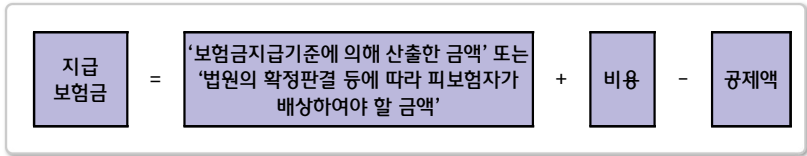
제7조(피보험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관련법규 *18)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자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지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

【용어풀이】

- ①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은 보험가입금액(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비용’**은 보험가입금액(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에서 정한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②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 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 ③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약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에 따르는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이라 합니다. <예시> 사고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의 확보, 소송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I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 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용어풀이】

'감가상각'이란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실되는 물건의 가치감소분"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제9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대인배상」 : 1 사고당 1억원
 - 2. 「대물배상」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관련법규*4)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관련법규*4)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지체 없이 :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이

- ③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동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4)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이 보험계약에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 2.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1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 단,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취급업자로서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2.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1조(용어정의) 제15호)
- 3. 피보험자자동차의 보유자 (제1조(용어정의) 제11호)

제12조(피보험자자동차의 범위)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타인차량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정된 1대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자가용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자가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및 영업용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한 경우)
2.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관련법규*4)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4.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관련법규*10)에서 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손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렌터카의 임차인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9.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을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text{지급보험금} = \text{실제손해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가.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3)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라. 다만,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4) *10)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용어풀이】

①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지급 방식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공제액'이 있는) 경우 : 보험금 지급기준 등에 따라 실제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한도 내 지급
2.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공제액'이 없는) 경우 : 사망/부상/후유장애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금액을 한도 내 지급(실제손해액 아님)

<예시>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공제액'이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금액인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지급보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② '과실상계'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이라 함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응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관련법규*4)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한도액까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6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무보험자동차(제1조(용어정의) 제5호)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①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②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7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단,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취급업자로서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18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타인차량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정된 1대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자가용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자가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및 영업용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한 경우)
2.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관련법규*4)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4.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관련법규*10)에서 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관련법규 *4)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관련법규 *4) *10)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11.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렌터카의 임차인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12.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관련법규*1)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관련법규*4)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2.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다.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용어풀이】

- ① **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 ② **공제계약**라 함은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 시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돕는 ‘공제사업’과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예시> 개인택시의 경우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과 체결된 공제계약
- ③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절 타인차량 복구비용

제2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타인차량 복구비용」에서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 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위 1항의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타차의 차량등록번호와 운전자(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규 *1) *4)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용어풀이】

- ①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예시> 외장부품의 코팅, 색상 등이 손상되었으나 도색 또는 판금만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 등
- ②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항(관련법규*3)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③ ‘**타차**’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합니다)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④ ‘③’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관련법규*3)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관련법규*1)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22조(피보험자)

「타인차량복구비용」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취급업자로서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23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타인차량 복구비용」에서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타인차량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정된 1대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 1. 자가용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자가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및 영업용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한 경우)
- 2.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관련법규*4)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 4.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관련법규*10)에서 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2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타인차량 복구비용」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5.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마멸**’이라 함은 갈려서 닳아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 9. 피보험자동차의 도난(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만의 도난을 포함합니다)으로 인한 손해
-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단, 타인자동차의 차량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14. 기명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15.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렌터카의 **임차인**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용어풀이】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 16.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법규 *1) *3) *4) *10)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제2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타인차량 복구비용」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text{지급 보험금} = \text{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text{비용} - \text{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2.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 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5.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타인차량 복구비용」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차량 복구비용」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타인차량 복구비용」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타인차량 복구비용」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타인차량 복구비용」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7.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8.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타인차량 복구비용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9.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① '**중요한 부분**'이라 함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자동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 ② '**감가상각**'이란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실되는 물건의 가치감소분"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6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4. 「타인차량 복구비용」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다른 자동차와 충돌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훼손되었을 때

제27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① ‘**정당한 사유**’라 함은 추가적인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권자가 보험회사로 제출해야할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누락으로 보험사고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②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원금 : 100원 / 이자율 : 연10%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③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8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타인 차량 복구 비용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험금 청구서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타인 차량 복구 비용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이점매각 시 이전서류		○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 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 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 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 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29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8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30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는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 등의 주장(또는 항변)사항과 동일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31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란 아무런 근거 없이 사고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손해액 입증 자료 등의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의 불리함을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 등 과실비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

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용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정기금'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치르거나 받는 돈을 말합니다.

제32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1.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33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관련법규*4)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관련법규*5)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 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관련법규 *4) *5)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관련법규*4)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2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4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자(공제를 포함합니다)가 이 보험의 배상책임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전하여 드립니다. 단, 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회사의 동종 원데이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4)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중복 시 보험금의 분담 예시】

피보험자동차 손해액 : 100만원, 계약 A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계약 B : 보험가입금액 50만원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A : 100만원, B : 50만원
 - 사고로 계약 A, B가 부담할 전체 손해액 : 100만원
 - 계약 A, B의 부담금액
 A : 100만원 X 100만원 / (100만원+50만원) = 666,667원
 B : 100만원 X 50만원 / (100만원+50만원) = 333,333원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배상책임에 따른 분담 예시】

A차량(과실비율 : 20%)과 B차량(과실비율 : 80%)의 과실로 C차량에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A차량 손해배상금 : 100만원 X 20% = 20만원
 B차량 손해배상금 : 100만원 X 80% = 80만원

제35조(보험회사의 대위)

-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타인차량 복구비용」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어풀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합니다. 즉, 손해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대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6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근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풀이】

- ① ‘**근궁**’이라 함은 처지가 이르지도 저리지도 못하게 난처하고 딱한 상황을 말합니다.
- ② ‘**경솔**’이라 함은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운 상태를 말합니다.

제37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8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7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용어풀이】

- ① ‘**가압류**’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압류한 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환가(매매,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처분을 말합니다.
- ② ‘**가집행**’이라 함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원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공탁금**’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로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④ ‘**회수청구권**’이란 보험회사가 대출한 공탁금은 피보험자 명의로 공탁소(법원 등)에 맡겨지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대출해준 보험회사에 양도해야 함을 말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9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지체 없이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4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의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③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관련법규*6)**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분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규 *6)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제42조(보험기간)

-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개시시각부터 마지막 날 종료시각까지입니다. 단,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시각 이후**에 보험계약이 종료됩니다.
- ②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최소 보험기간은 6시간입니다.

【용어풀이】

‘해지시각 이후’라 함은 보험 개시시각 기준 시간단위로 경과된 가장 빠른 시각을 말합니다.

- ① 보험 개시시각이 07시 25분이고 해지시각이 15시 05분이라면, 보험계약 종료시각은 15시 25분입니다.
- ② 보험 개시시각이 07시 25분이고 해지시각이 15시 55분이라면, 보험계약 종료시각은 16시 25분입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자동차에 관한 사항
 2.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0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0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 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용어풀이】

- ① ‘공동불법행위’라 함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② ‘연대채무자’라 함은 위 공동불법행위를 통해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는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 ③ ‘상호간의 구상권’이라 함은 만약 연대채무자 중 한사람이 채무를 100% 이행한 경우에, 대신하여 변제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후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이 법령에 의해 계산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손해배상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의 첫날 개시시각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고】

제47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제51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48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49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9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관련법규*19)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향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향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관련법규*4)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1조(보험료의 환급)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과 상관없이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제50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관련법규 *4) *19)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 라.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을 때

【용어풀이】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다 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과실과의 구별은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4.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용어풀이】

‘법정대리인’이란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친권자, 후견인)를 말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

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1조(보험료의 환급 등)

-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4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4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
 2. 보험계약이 해지(제4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4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2조(약관의 해석)

-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신의성실의 원칙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① 보험회사는 제28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관련법규*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관련법규*8)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4조(피보험자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7) *8)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제55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풀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이란 :

- ①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
-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2^(관련법규*11))
- ③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3^(관련법규*11))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제57조(분쟁의 조정)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관련법규 *11)→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관련법규*19)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8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9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관련법규 *19)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원데이자동차보험 별표

<별표 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별표 1>의 나이(연령)는 만 나이(연령)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 사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 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용어풀이】

호프만계수 :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계산시 장래에 대한 수입감소분을 현재에 미리 받음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 때 호프만 계수는 중간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항목	지급 기준
	합.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 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 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관련법규*10**)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 ②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 (주) 1. 제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을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관련법규 *10)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항목	지급 기준
----	-------

【용어풀이】

- ① **사업소득자** : 「소득세법」 제19조 ^(관련법규*10)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 ② **주요경비** :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 등을 말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은 제외)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등을 말합니다.
- ③ **기준경비율** :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합니다.
- ④ **노무기여율** : 사업소득액 산정에 있어 본인의 노무(勞務)가 기여한 비율입니다.
- ⑤ **단순경비율** :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합니다.

-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 ^(관련법규*12)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 ^(관련법규*12)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frac{\text{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text{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 ^(관련법규*12)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 ^(관련법규*12)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관련법규 *10) *12)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항목	지급 기준
----	-------

【용어풀이】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 ^(관련법규*12)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 ^(관련법규*12)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 다. 생활비용: 1/3**

관련법규 *12)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항목	지급 기준								
	<p>라. 취업가능월수</p> <p>(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관련법규*20)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p> <p>(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피해자의 나이</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1f2;">취업가능월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62세부터 67세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6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7세부터 76세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4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6세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2월</td> </tr> </tbody> </table> <p>(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p> <p>(5) 외국인</p> <p>(가) 적법한 일시체류자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나)를 적용함.</p> <p>(나) 적법한 취업활동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용어풀이】

- ①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 ②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항목	지급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frac{1}{1+i} + \frac{1}{1+2i} + \dots + \frac{1}{1+ni}$ </div> <p style="text-align: center;">i=5/12%, n=취업가능월수</p>

관련법규 *20)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나. 부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p>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p> <p>(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2.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00</td> <td>5</td> <td>75</td> <td>9</td> <td>25</td> <td>13</td> <td>15</td> </tr> <tr> <td>2</td> <td>176</td> <td>6</td> <td>50</td> <td>10</td> <td>20</td> <td>14</td> <td>15</td> </tr> <tr> <td>3</td> <td>152</td> <td>7</td> <td>40</td> <td>11</td> <td>20</td> <td></td> <td></td> </tr> <tr> <td>4</td> <td>128</td> <td>8</td> <td>30</td> <td>12</td> <td>15</td> <td></td> <td></td> </tr> </tbody> </table> <p>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p>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항목	지급 기준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 \times 휴업일수 \times \frac{85}{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관련법규*20)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 (1) 유직자
 -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 (2) **가사종사자**
 -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 (3) 무직자
 -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항목	지급 기준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 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위 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 ^(*)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 ^(*)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노동능력상실률</th> <th>인정액</th> </tr> </thead> <tbody> <tr> <td>45% 이상 50% 미만</td> <td>400</td> </tr> <tr> <td>35% 이상 45% 미만</td> <td>240</td> </tr> <tr> <td>27% 이상 35% 미만</td> <td>200</td> </tr> <tr> <td>20% 이상 27% 미만</td> <td>160</td> </tr> <tr> <td>14% 이상 20% 미만</td> <td>120</td> </tr> <tr> <td>9% 이상 14% 미만</td> <td>100</td> </tr> <tr> <td>5% 이상 9% 미만</td> <td>80</td> </tr> <tr> <td>0 초과 5% 미만</td> <td>50</td> </tr> </tbody> </table>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 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 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관련법규 *20)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항목	지급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p>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p>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가) 산정대상기간</p> <p>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p> <p>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p> <p>(나) 산정방법</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2) 가사종사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3) 무직자(학생포함)</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6) 외국인</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다. 노동능력상실률</p> <p>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육내 또는 육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가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라. 노동능력상실기간</p> <p>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p> <p>마. 호프만 계수</p> <p>사망한 경우와 동일</p>
3. 가정간호비	<p>가. 인정 대상</p> <p>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p> <p>(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p>

항목	지급 기준
	<p>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p> <p>(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p> <p>(나) 자력으로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p> <p>(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p> <p>(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p> <p>(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p> <p>(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p> <p>(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p> <p>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p> <p>(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p> <p>(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p> <p>(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p> <p>나. 지급 기준</p> <p>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p>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p>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 되는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다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p> <p>【용어풀이】 ①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②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항(관련법규*3)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p> <p>(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p> <p>(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관련법규*21)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관련법규*16)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p> <p>【용어풀이】 ‘내용연수’라 함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p>
2. 교환가액	<p>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p>

관련법규 *3) *16) *21) 약관 관련법규 관련법규 참조

항목	지급 기준
	<p>(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p>
3. 대차료	<p>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법규*21)에 따라 등록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p> <p>【용어풀이】 ①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②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③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p> <p>(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p> <p>【용어풀이】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관련법규*21)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p> <p>(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p>

항목	지급 기준
	<p>(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법규*21)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p> <p>(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p>
<p>【용어풀이】</p> <p>‘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p>
4. 휴차료	<p>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p> <p>(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관련법규*21)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5. 영업손실	<p>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p>

항목	지급 기준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인정기간</p> <p>(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음.</p> <p>(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p>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p>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p>
7. 견인비용	<p>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p>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

상해/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장애등급	상해 (보험가입금액 : 1,500만원)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	비고
1급	1,500만원	3,000만원	
2급	800만원	2,700만원	
3급	750만원	2,400만원	
4급	700만원	2,100만원	
5급	500만원	1,800만원	
6급	400만원	1,500만원	
7급	250만원	1,200만원	
8급	180만원	900만원	
9급	140만원	720만원	
10급	120만원	540만원	
11급	120만원	420만원	
12급	120만원	300만원	
13급	80만원	180만원	
14급	50만원	120만원	

- 주) 1.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별표 4> 과실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 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배상 I」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 I」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p> <p>(3) 「대인배상 I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 I」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p> <p>(*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관련법규*3)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p> <p>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p>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p>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p> <p>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가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p>

관련법규 *3)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 무면허운전(*2),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 적용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27조 2항, 제31조 5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시점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자사 홈페이지(www.hanainsur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구분	한도금액	상해 내용
1급	3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화상·좌창·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척주 손상으로 불안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p>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p> <p>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 용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용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p> <p>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p> <p>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3급	1200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p> <p>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p> <p>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p> <p>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p> <p>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p> <p>8. 척추 손상으로 불안전 허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p> <p>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p> <p>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p> <p>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p>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p>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p>
4급	1000만원	<p>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p> <p>2. 각막이식술을 시행한 상해</p> <p>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p> <p>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p> <p>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p> <p>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8. 위팔뼈목 골절</p> <p>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p> <p>10. 위팔뼈 위관절용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izzi 골절을 말한다)</p> <p>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p> <p>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p> <p>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p> <p>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p> <p>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p> <p>23. 목알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p> <p>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p> <p>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p>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26.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위팔뼈 몸통 골절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노뼈 붓돌기 골절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11. 손목 손배뼈 골절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무릎뼈 골절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한 상해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입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손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의 골절 18. 노뼈목 골절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리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빗장뼈) 골절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15. 손목 부위 손배뼈·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용 또는 기용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위팔뼈 위관절용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손허리뼈 골절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영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장뼈(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손가락관절 탈구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2.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손가락·발가락 평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손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중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공통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p> <p>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p> <p>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p> <p>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p> <p>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p>
머리	<p>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혈액낭중, 거미막 낭중,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p> <p>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진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p> <p>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p> <p>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p>

영역	내용
	<p>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p> <p>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p> <p>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p> <p>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여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p>
흉·복부	<p>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중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 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p>
척추	<p>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p> <p>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 9급으로 본다.</p> <p>라. 마미증후군은 척추손상으로 본다.</p>
팔·다리	<p>공통</p>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p> <p>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p> <p>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p> <p>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p> <p>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p> <p>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p>

영역	내용
	<p>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끝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p> <p>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p> <p>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p> <p>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뼈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수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p> <p>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p> <p>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p> <p>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열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p>
팔	<p>가. 상부관절손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p> <p>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p> <p>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p> <p>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다리	<p>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p> <p>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p> <p>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p> <p>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p> <p>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 종아리뼈의 견형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p> <p>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p> <p>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p>

영역	내용
	<p>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p> <p>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p> <p>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p> <p>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p> <p>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p>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관련)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내용
1급	1억5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여리(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 체 장애 내 용
5급	9,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0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 체 장애 내 용
8급	4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아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료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 체 장 해 내 용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점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점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빗장뼈), 복장뼈(앞가슴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 체 장 해 내 용
		램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펴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00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麻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1장 대인배상 I 지원금 특별약관	98
제2장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99
제3장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101
제4장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104
제5장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05
제6장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08
※ 관련법규	111

특별약관 색인 목차

구분	특약명	페이지
ㄱ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99
ㄷ	대인배상 I 지원금 특별약관	98
ㄴ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101
ㄱ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104
ㄹ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05
ㅍ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08

원데이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제1장 대인배상 | 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 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배상책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배상책임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공제를 포함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 I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보전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로 합니다.

-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긴급조치 비용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기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장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이 체결되고 본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경·4종화물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제3조(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 서비스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 초과거리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 탑재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배터리충전 서비스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배터리 교환 시는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예비타이어교체 서비스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 탑재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긴급구난 서비스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①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③ 구난 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 ④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5. 타이어 펑크수리 서비스

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 제1호의 긴급견인서비스나 제4호의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1)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2) Run-flat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펑크와 같이 펑크 수리 시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
- 3)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 4)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다. 펑크 1개 부위를 초과하여 수리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②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도로 연결된 도서지역제외)의 경우 위 제1항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긴급출동서비스 비용 상당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용상당 금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피보험자동차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소유자인 타인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타인차량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정된 1대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 1. 자가용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자가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및 영업용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한 경우)
- 2.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관련법규*4)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제5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6조(서비스 횟수)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 가입 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총 1회입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종료)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① 보험약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이 종료된 때
- ② 이 특별약관 제6조(서비스 횟수)에 의거 긴급출동 서비스 횟수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장 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관련법규*13)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관련법규*14)의 중상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4) *13) *14)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합의금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아래 표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액”의 상해급수별 보상 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단, 가 내지 다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고, 향후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형사합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사망케 한 경우

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관련법규*14)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다.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형법」(관련법규*13)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 조 제1항 제2호(관련법규*14)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용어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관련법규*14)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는 1. 신호 지시 위반사고 2. 중앙선침범사고 3. 속도위반사고 4. 추월방법위반사고 5. 건널목통과 방법위반사고 6. 횡단보도사고 9. 인도침범사고 10. 개문발차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 12. 화물고정의무위반사고가 해당되며, 7. 무면허사고, 8. 주취 약물복용사고는 제외 됩니다.

2.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 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 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액]

구분	사망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	상해등급 4급, 5급	상해등급 6급, 7급	상해등급 8등급내지14급
실속형	3,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보상하지않음
고급형(확대)	30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② 방어비용

피보험자가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보상 한도액 내에서 실제 발생 한 변호사비용 등 방어비용을 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약식기소 제외) 다만,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관련법규*15)에 따라서 법원에서 공판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관련법규*15)에 따라서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는 보상 한도액 내에서 방어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벌금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2천만 원 한도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법규*9) 제5조의13에 의한 경우, 3천만 원 한도로 지급

④ 한 사고로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험금을 두 가지 이상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자동차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소유자인 타인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타인차량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정된 1대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자가용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자가용 승합자동차(16인승 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및 영업용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한 경우)
2. 운전자 본인 소유가 아닌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관련법규*4)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4.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관련법규*10)에서 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단, 기명피

관련법규 *13) *14)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관련법규 *4) *9) *10) *15)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보험자가 자동차 취급업자로서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싸움으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보통약관 제1조 제4호) 또는 음주운전(보통약관 제1조 제9호)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으로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1.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렌터카의 임차인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지 않은 경우
 12. 피보험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리스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하고, 장기렌터카는 임차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간주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
- ② 회사는 피해자가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보통약관 제1조 제15호)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부담)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자(공제를 포함합니다)가 이 보험의 배상책임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전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장 신용카드이용 보험료 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장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단,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취급업자로서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2.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1조(용어정의) 제15호)
3. 피보험자자동차의 보유자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자동차 또는 피보험자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boxed{\text{지급 보험금}} = \boxed{\text{실제손해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 나. 다른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 I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한다) 및 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무보험자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② 위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과 대인배상II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및 대인배상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배상의무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6장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 「타인차량복구비용」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취급업자로서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타인차량복구비용」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실제 수리 시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을 초과한 경우로서, **외장부품**을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나 피보험자가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희망하는 경우

[용어풀이]

- ①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②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격**’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 2 제 1항 제4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③ ‘**외장부품**’이라 함은 자동차의 외판을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범퍼, 보닛(후드), 펜더, 트렁크리드, 도어 및 백도어를 의미합니다.

제3조(OEM부품 사용에 대한 특례)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타인차량복구비용」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OEM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및 「타인차량복구비용」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여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
2. 자동차에 이미 장착되어 있던 **OEM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 이외의 부품**이 파손되어 교환수리하는 경우

[용어풀이]

- ①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② ‘**OEM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 이외의 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중고부품, 재생부품 등을 의미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취급업자로서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타인차량복구비용」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 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보통약관 「대물배상」인 경우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 보통약관 「타인차량복구비용」인 경우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한입)

-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타인차량복구비용」의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였으나,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7조(적용제외)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며,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따른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회사가 OEM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OEM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이 특별약관 제3조(OEM부품 사용에 대한 특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따른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7장 무사고 환급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하 '무사고'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제2조(무사고 환급 적용)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이력이 없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기간 종료일 또는 해지일 이후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질문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항에서 정한 안내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보험기간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신한 보험계약자에게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단, 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이력이 있으나 모든 담보 및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사고 처리가 최종 종결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무사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②항에서 정한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결제부분취소,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 지급금액은 특별이익 한도인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10%와 3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③항에 따라 지급한 무사고 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

-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80조(운전면허)

-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 가. 대형면허
 - 나. 보통면허
 - 다. 소형면허
 - 라. 특수면허
 - 1) 대형견인차면허
 - 2) 소형견인차면허
 -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 가. 보통면허
 - 나. 소형면허
 -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 ③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시·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

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⑤ 자동차제작·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9. “자율주행자동차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
-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용어풀이】

- ①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책임보험’**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 ③ **‘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제5조의 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 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보험금 등)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

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 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 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종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7.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할 경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6)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 ㉔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제공 동意的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意的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조(무료 열람권)

신용조회회사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인 신용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1회 이상 무
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이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11)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라. 주권상장법인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

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12) 통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 ② 통계청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게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2호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15)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1항(차량충당조건)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량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량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7)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생략)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금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등록)

-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2항(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1. 승용자동차1의2, 경형승합자동차
- 2. 소형승합자동차
-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총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총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총당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말소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 에 합격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 ③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총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이 약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용어정의로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조항의 내용과 정의 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가족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제외)의 배우자

고의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인용하는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일정한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함

공제계약

공제조합이 각각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자동차사고 시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돕는 “공제사업”에 의한 계약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급여소득자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사람

기명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ㄷ

대차료

대차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ㄹ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항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 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음

ㄴ

보통약관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보험 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한 내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나, 특정의 사안(예: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전쟁, 지진, 태풍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은 예외로 하여 그 의무를 면함

보험가액

1.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
2.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보상 한도액)

보험금

자동차 사고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

보험료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

부모, 배우자 및 자녀

1.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3.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배상의무자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

ㄹ

상해 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소지품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예)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 가방 및 골프채 등

12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 ① 신호·지시위반사고 ② 중앙선침범사고 ③ 속도위반사고
- ④ 추월방법위반사고 ⑤ 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⑥ 횡단보도사고
- ⑦ 무면허운전사고 ⑧ 주취/약물복용사고 ⑨ 인도침범사고
- ⑩ 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안전의무위반사고
- ⑫ 화물고정의무위반사고

실제 손해액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과실상계 및 보상 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함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함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관련법규*4)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이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ㄱ

자기부담금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관련법규 *4) → p111 약관 관련법규 참조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

전부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

정부보장사업

뺑소니 또는 무보험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응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한도액까지 보장하는 제도

정차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ㄷ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가입시 선택해서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추가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

ㄹ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ㅎ

후유장애 등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후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통지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 개인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의 방식으로 동의한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에 소개하거나 구매를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은 금융회사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 가. 열람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66-3000/1644-3000/1644-2500
	서면	03137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7 (인의동, 하나손해보험 빌딩)
	인터넷	www.hanainsure.co.kr

-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 가. 열람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 규정
 -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의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개인정보 관리·보호인	손해보험협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02) 6670-8032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7 (인의동, 하나손해보험 빌딩) 7층	02) 3702-8500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15층 B동(케이티타워) 손해보험협회	1332 (국번없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1층 금융민원센터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하나손해보험) • 전화: 1566-3000 • 인터넷: www.hanainsure.co.kr